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
가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1호	500
나.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·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2호	500
다.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3호	500
라.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4호	500
마.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48조제1항제1호	1,500
바. 법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	법 제48조제1항제2호	1,500

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		
사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5호	500
아.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1항제3호	1,500
자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1항제4호	1,500
차.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6호	500
카.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7호	500
타.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 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	500
파. 법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1항제5호	1,500
하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제1항제6호	1,500
거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8호	500
너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8조제2항제9호	500